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·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27

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문진석・황운하・이건태

서영석 · 윤종군 · 조인철

김동아 · 문정복 · 이연희

김기표 · 김태선 · 이상식

안호영 · 정진욱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

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·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. 이러한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·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.

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, 예산이 소득·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

- 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 서를 작성하도록 함(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).
- 나.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(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 4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·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22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"제73조의4"를 "제73조의5"로 한다.

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정부는 예산이 소득·자산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7조의2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소 득·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소득· 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에는 소득·자산 재분배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

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3(소득・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소

득·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한다.

②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소득·자산 재분배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4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소득·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 하 "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소득·자산 재분배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

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,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4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소득·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소득·자산 재분배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3조의5(종전의 제73조의4)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득·자산 재분배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작성, 제34조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7년도 예산안 및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, 제71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및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

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	③
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	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73조의4</u> 에 따른 중장기 기	2. <u>제73조의5</u>
금재정관리계획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	제16조(예산의 원칙)
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	
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	
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정부는 예산이 소득ㆍ자산의
	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
	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
	<u>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</u>
	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27조의2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
	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
	산이 소득·자산의 재분배에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~ 9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0. ~ 16. (생 략) <신 설>

미칠	영항	:을 다	미리	분석	한	보	고
서(이	하	"소	득 • .	자산 /	재분	.배	인
지 ㅇ	계산시]"라	한1	斗)를	작	·성	하-
여야	한다	<u>•</u>					

- ②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 서에는 소득·자산 재분배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 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----

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 9의3.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 산서

10. ~ 16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의3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 산이 소득·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 <신 설>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 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

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 다.

② 소득・자산재분배인지 결산 서에는 집행실적, 소득 · 자산 재분배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8조의4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 부는 기금이 소득 · 자산의 재 분배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한 보고서(이하 "소득・자산재 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소득・자산재분배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소득・자산 재 분배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 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소득・자산재분배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서류) -----

기금운용계획변경안(이하 "기 금운용계획안등"이라 한다)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 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6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7. (생 략) <신 설>

-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 6의3.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 금운용계획서
- 7.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4(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소득·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 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소득·자 산 재분배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 제73조의4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① (생 략)

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<u>4.</u> (생 략)

③ ~ ④ (생 략)

제73조의5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소득 · 자산 재분배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- 5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③ ~ ④ (현행과 같음)